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8-361
----------	-------

제출년월일 : 2020. 4. .

제 출 자 : 현옥순 의원 외 13명

1. 개정이유

- 안산시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해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새롭게 편성된 의원정책개발비의 용도에 맞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과 “정책개발비”에 대해 정의

○ 연구활동 기간의 명확한 규정(안 제4조, 안 제12조)

- 연구활동기간 명확화(안 제4조) : 당해년도 12월말까지로 규정되어 있던 연구활동기간을 11월 10일까지로 하여 연구활동기간을 명확하게 하고,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까지 활동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예산지원에 대한 혼란 방지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명확화(안 제11조) : 당해년도 12월말까지로 규정되어 있던 결과보고서 제출일자를 연구활동기간에 맞춰 11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

○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구체화(안 제7조, 안 제8조)

- 심의위원회의 기능 추가(안 제7조) :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 추가
- 서면심의 기능 추가 (안 제8조) :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등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

○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방법 등 구체화(안 제9조)

- 1인 1연구단체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개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연구단체 대표의원 1인을 두도록 규정하여 연구단체 운영의 효율성 도모

○ 관련 서식 등을 개정안에 맞게 정비(별표, 별지 제1호~제5호 서식)

3. 개정규칙안 : 붙임 1

4. 예산수반사항 : 붙임 2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5. 기타 참고사항

- 현행규칙 : 붙임 3
- 참고자료 : 붙임 4

<붙임 1> 개정규칙안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산시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연구단체”라 한다)란 안산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안산시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와 안산시의회사무국(이하“의회사무국”이라 한다.)이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4.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활동의 범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회의, 토론회, 현장방문 등
2. 특정 분야에 관한 연구용역
3. 그 밖에 안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4조(연구활동의 기간)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의장이 연구단체에 등록을 통보한 날부터 해당 연도 11월 10일까지로 한다.

제5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을 위한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필요경비

② 1개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는 연간 300만원 이내로 하고, 연구계획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의회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간사가 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변경,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체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사업기간의 적정성 등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안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관련 안전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안전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연구단체 대표위원을 출석시켜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등록 등에 관한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연구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 1인을 둔다.

② 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2개의 연구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개의 연구단체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단체 등록 및 변경) ①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제출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의원, 연구주제 등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비 집행)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에 심의결과가 통지된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비는 [별표]의 연구활동비 지출기준에 따라 집행하며, 승인된 연구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거나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승인된 연구활동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비를 사용했을 때
2.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3. 연구활동보고서가 당초의 연구활동계획에 현저히 미달될 때
4.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제12조(연구활동보고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연도의 6월 3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11월 10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예산 지원에 대한 정산내역과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이 완료된 연구단체는 연구용역 산출물 활용계획을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보고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 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취소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9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의회사무국
입안자	시의원	현옥순 의원 대표발의

[별표]

연구활동비 지출기준

(제11조 관련)

비 목	지 출 기 준	비 고
인 건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에 의한다. • 산출기준 : (월임금액 ÷ 22) × 고용일수 	수령증(영수증)등 증빙서류 첨부
여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 원 : 「안산시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에 의한다. ○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등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다. 	"
자료수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활동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인쇄, 복사, 제본비 물품구입비 등 경비 	"
회 의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내용과 관련한 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활동과 연계된 전문가 자문경비, 강사료, 식비, 다과비, 그밖에 비용 등 ○ 연구활동에 소용된 비용 중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 	"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연구단체명 :
2. 연구과제명 :
3. 구성의원 : 인

소속 상임위원회	성명	서명	비고

붙임 연구활동계획서 1부.

년 월 일

제출인 : 대표의원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의회 의장 귀하

연구활동 계획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10조에 따라 _____년도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의원			
구성의원			
연구내용		주 제	
		목 적	
연구방법 및 세부추진계획		<“별첨”구체적으로 기재>	
연구 활동비	총 액		
	산출내역	<“별첨”구체적으로 기재>	
기 타			

년 월 일

제출인 : 대표의원 ○ ○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의회 의장 귀하

연구활동 심의결과 통보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8조에 따라 귀 연구단체의 _____년도 연구활동계획과 관련한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과제명	
대표의원	
심의결과	
비고	

년 월 일

안 산 시 의 회 의 장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10조에 따라 본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의원	
변경사항	
변경사유	

년 월 일

제출인 : 대표의원 ○ ○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의회 의장 귀하

_____년도 연구활동 (중간·최종) 보고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12조에 따라 연구활동 (중간·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의원		
구성의원		
연구 내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 추진사항	<별첨>구체적으로 기재>
연구 활동비	총 액	금 천원
	집 행 액	금 천원 <별첨>구체적으로 기재>
기타사항		

- 붙임 1. 연구활동 (중간·최종) 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정산서 1부.

년 월 일

제출인 : 대표의원 ○ ○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의회 의장 귀하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8-361
----------	-------

제안년월일 : 2020. 4. 24.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수정이유

- 지방선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연구활동기간과 연구활동보고서 제출기한을 조정하고, 서면심의 규정을 삭제하여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연구활동기간을 “11월 10일”에서 “12월 31일”로 수정함. (안 제4조)
-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내용을 삭제함.
(안 제8조제5항)
- 중간보고서 제출기한을 “해당연도의 6월 30일까지”에서 “연구 활동 기간 중 1회 이상”으로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11월 10일까지”에서 “연구활동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로 수정함.
(안 제12조제1항)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중 “11월 10일” 을 “12월 31일” 로 한다.

안 제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해당연도의 6월 3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11월 10일까지” 를 “연구활동 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서와 연구활동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연구활동의 기간)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의장이 연구단체에 등록을 통보한 날부터 해당 연도 11월 10일까지로 한다.	제4조(연구활동의 기간) ----- ----- ----- 12월 31일-----.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 ④ (생략)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u>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u>	<삭 제>
⑥ (생략)	⑤ (개정안의 제6항과 같음)
제12조(연구활동보고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u>해당연도의 6월 3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11월 10일까지</u> 최종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보고서) ① ----- ----- <u>연구활동 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서와 연구활동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u> -----.
②·③ (생략)	②·③ (개정안과 같음)